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(배현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2253

발의연월일: 2020. 7. 21.

발 의 자:배현진·홍준표·조경태

윤영석 • 김희국 • 김형동

이종성 • 권성동 • 윤한홍

김예지 · 김승수 · 최승재

의원(12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최근 발생한 故최숙현 선수 사건을 비롯하여 과거 심석희 선수의 성 폭행 피해 폭로 등 체육계 내의 인권침해와 갖가지 비리에 대한 고발 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, 스포츠계의 비리 및 인권침해 현실에 대한 실태조사와 이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지지 않았음.

이에 2020년 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문화체육관광부 산하에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 및 예방교육을 담당하는 스포츠윤리센터가 설립 준비 중이나 해당 업무에 대한 법률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.

따라서 스포츠윤리센터가 "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"에 대해 매년 실태조사를 실시하고,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 는 법률적 근거를 마련함. 또한, 이 자료를 스포츠 비리 및 체육계 인권 침해의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함(안 제 18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).

나아가 예방교육의 범위를 "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"까지 확장하여 체육계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스포츠 비리 및 인권침해를 예방할수 있는 예방교육의 법률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(안 제18조의7).

법률 제 호

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

법률 제16931호 국민체육진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8조의4부터 제18조의8까지를 각각 제18조의5부터 제18조의9까지로하고, 제18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, 제18조의7(종전의 제18조의6)의 제목 중 "성폭력 등 폭력"을 "스포츠비리 및 인권침해"로 하고, 같은 조(종전의 제18조의6)제1항 중 "체육계의 성폭력 등 폭력"을 "스포츠비리 및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"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"성폭력 등 폭력 예방교육"을 "예방교육"으로 한다.

제18조의4(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) ① 문화체육관광 부장관은 매년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발표하고, 이를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를 예방하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렁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| 현 행 | 개 정 안 |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|--|
| <u><신 설></u> | 제18조의4(스포츠비리 및 체육계 | | | |
| | 인권침해 실태조사) ① 문화체 | | | |
| | 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스포츠비 | | | |
| | 리 및 체육계 인권침해에 대한 | | | |
| |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 | | | |
| | 를 발표하고, 이를 스포츠비리 | | | |
| | 및 체육계 인권침해를 예방하 | | | |
| | 기 위한 정책수립의 기초자료 | | | |
| | 로 활용하여야 한다. | | | |
| |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비리 | | | |
| | 및 체육계 인권침해 실태조사 | | | |
| | 의 방법과 내용 등에 필요한 | | | |
| |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| | | |
| | <u>정한다.</u> | | | |
| <u>제18조의4(고발 및 징계요구) (생</u> | <u>제18조의5(고발 및 징계요구) (현</u> | | | |
| 략) | 행 제18조의4와 같음) | | | |
| 제18조의5(신고 및 상담 시설의 | <u>제18조의6</u> (신고 및 상담 시설의 | | | |
| 설치 등) (생 략) | 설치 등) (현행 제18조의5와 같 | | | |
| 게10구시C(서프러 드 프러 세비. | | | | |
| 제18조의6(성폭력 등 폭력 예방 | 제18조의7(스포츠비리 및 인권침 | | | |
| 교육의 실시) ① 문화체육관광 | <u>해</u> 예방교육의 실시) ① | | | |
| 부장관은 체육계의 성폭력 등 포러 바지를 의하여 예바교육 | 민 서포러 드 체유게 이권치채- | | | |
| <u>폭력</u> 방지를 위하여 예방교육 | 및 성폭력 등 체육계 인권침해- | | | |

| 을 | 실시 | 하여 | 야 | 한다. |
|---|----|----|---|-----|
| | | | | |

- ② 제1항에 따른 <u>성폭력 등 폭</u> <u>력 예방교육</u>의 내용 및 방법, 대상, 기간 등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.
- <u>제18조의7</u>(장려금의 환수) (생 <u>2</u>략)
- <u>제18조의8</u>(징계정보시스템의 구 <u>조</u> 축·운영 등) (생 략)

| | 2 | | | 예방교- | <u>육</u> |
|---|-------|-----|-----|------|----------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| | | | | |
| 저 | 18조의8 | (장려 | 금의 | 환수) | (현행 |
| | 제18조의 |]7과 | 같음) | | |
| 저 | 18조의9 | (징계 | 정보시 |]스템의 |] 구 |
| | 축·운영 | 등) | (현행 | 제18조 | :의8과 |
| | 같음) | | | | |